

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3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963,371,000	28,901,130
일 반 회 계	938,000,000	28,140,000
일 반 회 계	938,000,000	28,140,000
특 별 회 계	25,371,000	761,130
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1,604,000	48,120
지 하 수 관 리 특 별 회 계	343,000	10,290
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사 업 특 별 회 계	11,445,000	343,350
기 반 시 설 사 업 특 별 회 계	145,000	4,350
주 차 장 특 별 회 계	11,834,000	355,02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,078,398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5,424,758천원, 목적예비비 19,653,640천원)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제 6 조 금회 추경 후 국가 및 시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,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할수 있고, 간주처리한 예산은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